

1. 의결주문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분야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의해 항공분야 전문기관에 사용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「항공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8565호, 2021. 12. 7. 공포, 2022. 12. 8. 시행)되어 부령에서 그 위탁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며 더불어,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2차관으로 변경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·위탁 개정(안 제33조제3항)
- 나.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2차관으로 개정(안 제4조제5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28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되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법 제75조제3항”을 “법 제75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법 제75조제4항”을 “법 제75조제5항”으로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

1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
2.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
3.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·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
4.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
5.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
6.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
7.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
8.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

제4조제5호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) (생 략) 1. ~ 4. (생 략) 5.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6. (생 략)	제4조(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)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2--- 6. (현행과 같음)
제3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 공청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1호 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만 위임한다. 1. ~ 27. (생 략) 28.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 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 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 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.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 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 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 는 변경신고의 수리 다.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준 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 른 양도·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	제3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1. ~ 27. (현행과 같음) 28. ----- -----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
고

라.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
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
른 합병 신고의 수리

마.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
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
른 상속 신고의 수리

바.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
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
른 휴업 신고의 수리

사.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
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
른 폐업 신고의 수리

아.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준
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
업개선 명령

자. · 차. (생 략)

29. ~ 35. (생 략)

②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자. · 차. (현행과 같음)

29. ~ 3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
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
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

1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
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
경신고의 수리

2.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
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

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

3.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·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

4.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

5.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

6.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

7.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

8.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

④ ----- 법 제75조제4항-----

-----.

⑤ ----- 법 제75조제5

4항에 따라 법 제69조의2 각 호의
업무를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
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.

항-----

-----.